W.

개발 용역 계약서

(주) 아토 (이하" 갑")와 에임시스템 주식회사 (이하 "을")은 쌍방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각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2003년 4월 23 일
계약 명	Atto Cannon APT6000 CTC 개발 프로젝트
계약금액	₩100,000,000
부가세	₩10,000,000
계약기간	2003년 5월 1일 ~ 2003년 10월 31일
지체보상금 율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3.0
하자보증기간	최종검수 후 6개월
대금지급조건	1. 지급횟수: 총4회
12	2. 지급액:
	- 계약금 30%: 계약 후 즉시
22 00 00	- 1차 중도금 20% : CTC program 개발 완료 시
	- 2차 중도금 20%: 장비 porting 완료 시
	- 잔 금 30% : 실제 FAB 운영 후
100	3. 지급방법: "을"의 청구 일로부터 10일내 지급
특이사항	1. 본 개발 프로젝트의 산출물인 Cannon APT6000 장비
	Controller의 Run-time license 가격은 장비 당 ₩1,000,000으
	로 하고, "갑"은 "갑"의 고객에게 이를 판매 시 마다 "을"에게
	이를 지불 한다.
	2. OptiCTC 외에 필요한 System S/W(window2000, SQLServer
	2000 등)와 CPU box등 H/W 장착 비용은 전적으로 "갑"이 부
	담한다.
	3. UMS(Upgrade & Maintenance Service): 계약총액의 10%/년
	4. 개발 완료 후 "을"은 "갑"에 사용자 교육을 실시 한다.

■ 첨부서류 :

- 1. 개발 용역 내역서 (제안서)
- 2. Project 산출물
- 3. 교육 내용

"갑" ㈜아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

대표이사

"≘" 에임시스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15-6

대표이사

김 만 기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도급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2조(계약대상)

본 계약에 의거한 개발업무의 대상 및 범위는 별첨한 "개발 용역 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중도해지)

- 1. "을"은 본 계약 이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부득이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갑"이 기 지급한 대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와 손실에 대해 "갑"은 "을"에게 손해 (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본 계약을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
 - 3) "을"이 "갑"에게 중대한 손해 또는 위해를 끼친 때
 - 4) (울"이 정부로부터 영업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때
 - 5) "을"이 파산, 회사정리 또는 타 회사와 합병한 때
 - 6) 재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을"이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갑 "이 인정한 때
-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변경)

- 1. "갑"의 귀책사유로 개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갑"과 "을"간의 합의에 따라 페이지 1의 "계약내용요약"표의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 2.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일시 중지하여야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계약수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3. 천재지변 혹은 기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계약 기간 내에 개발을 완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갑"에게 서면 통지하며 "갑"과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검수 및 납기)





- 1. "갑"이 산출물 검수를 실시하되, 검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2. 검수기준은 "갑"의 제시기준에 따라 사전에 작성된 검수 표에 의하며, 검수에 합격하면 "갑"은 검수확인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 3. "갑"은 필요 시 산출물 완성 전, 중도검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 4. 납기라 함은 산출물을 "갑"이 검수 가능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할 예정일을 의미한다. 납기 전 산출물 제출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을"은 납기지연 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사유와 제출예정일을 "갑"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하고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지체보상금)

"을"이 "갑"과의 합의 없이 납기 내 산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치 못할 때에는 페이지 1의 "계약내용요약"표의 지체보상금 율에서 정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최종고객에게 지불하여야 할 지체보상금의 최대금액은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조(위험부담)

산출물 검수완료 전에 산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되었을 경우, "을"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산출물 제작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손해배상)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직접, 간접 및 유형, 무형의 손해일체를 배상한다. 또한, "을"의 의무불이행 혹은 용역산출물에 대한 보증의 위반으로 "갑"이 그의 고객이나 제3자로부터 클레임을 받을 경우 동 클레임의 해결을 위한 비용을 "갑"에게 보상하며, 그 배상액은 본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9조(하자보증)

- 1. "을"은 산출물의 검수 완료 일로부터 페이지 1의 "계약내용요약"표상의 하자보증기간동안 산출물에 대하여 추가대금 없이 하자보증을 한다.
- 2. 하자보증기간 도중, 하자발생시에는 "을"의 부담으로 하자를 보완한다. 단, "갑"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3. "을"이 하자보증의무를 해태 한 경우에는 "갑"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 4. 하자보증기간 이후의 유지보수는 "갑"과 "을"간에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에 의한다.

제10조(기술지원)

"을"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기술지원, "갑"(또는 고객)의 요원교육 등을 개발 용역 내역서에 준하여 수행한다.

제11조(법규준수)

"을"은 본 계약이행에 있어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민형사상의 손해는 "을"이 부담하고 "갑"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제12조(제세공과)

계약이행에 따라 "을"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3조(비밀유지)

- 1. "을"은 "갑"의 모든 기술정보(경영, 기술, 자료, 지식)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갑"의 승인 없이 기술정보를 계약이행 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열람 또는 누출하여서도 안 된다.
- 2. 본 조항은 "을"의 종업원, 퇴직자 및 하도급업자에게도 적용되며 본 조(16조)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갑"의 손해를 "을"이 배상하고 제3자와의 분쟁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3. 계약만료나 해지(해제) 또는 "갑"의 요구 시 "갑"이 제공한 기술정보와 그 복사 물, 생산물 일체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대금청구 및 지불)

대금 지금조건은 본 계약서 페이지 1의 "계약내용요약"표상의 대금지급조건에 의거하여 "갑"이 "을"의 청구 시 지급한다.

제15조(원 계약상의 의무)

본 계약상, "을"의 업무가 "갑"의 고객에 대한 계약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하도급 업무일 경우 "을"은 "갑"과 "갑"의 고객간의 계약("원 계약")상 "갑"의 의무 중 해당부분을 승계 부담한다.

제16조(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해 "을"이 "갑"에게 공급한 납품 물과 계약이행 시 산출되는 프로그램과 그 노하우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판권 포함)은 "갑"의 소유로 한다.

제17조(의무유지)

"을"은 본 계약 만료(해지) 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다음;

- 1) 제9조(하자보증)
- 2) 제13조(비밀유지)

제18조(양도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비용처리)

본 계약 이행 시 발생되는 비용(개발자 식비, 교통비 등)은 "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20조(협의 및 조정)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

제21조(합의관할)

본 계약상의 합의관할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 끝

첨부서류 2. Project 산출물:

- 1. 요구사항 기술서
- 2. 유스케이스 모형 기술서
- 3. 시스템 아키텍쳐 정의서
- 4. IO 등록 / Function 등록 / Alarm 등록 / InterLock 등록 / GUI 등록 사양서
- 5. 프로그램 (OptiCTC)
- 6. 매뉴얼
- 7.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 (인수인계, 설치후 관리)

첨부서류 3. 교육 내용

■ 교육 내용 :

- 1. 개발자 교육 IO 등록, Function/Transaction 등록, Alarm 등록, Interlock 등록, Custom GUI 작성
- 2. 사용자/ 운영자 교육 설치방법, 각 화면별 기능설명, (사용자 등록, Alarm 관리, Recipe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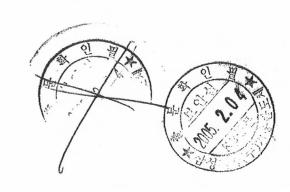


빈출번호: 714372 / 기홍사업장

구분 성명 사번 부서명 결재일 기안 안덕렬 95040281 T기술3그룹(메모리) 2005.02.03 16:42:20 결재 - 컴정태 95:059395 - - - - - - - - - - - - - - - - 2005.02.03-17:31:03

👸 실세품목

수량 단위 Serial # 품목/제목 부류 변호 1.0 6000 197 EA CANON MAIN BODY 설비자산 설비자산 1.0 6000 197 LSC 설비자산 설비자산 EA 1.0 9102768 O3 GEN 설비자산/설비자산



2005-05-03

🚳 반출내용

반출경로 기흥사업장에서 사외(의)로

반입여부 반입함 반입예정일

수령부서 / 업체 이토 암영자 '

🛱 보안실 확인

반출확인자 이 나 3 기나 5 기대의 반출확인자 반출확인자

반출사업장 바입되었지 (인)

* 반출증과 실물을 확인 받고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반입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고 해당 반출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업부서 담당자 및 결재자에게 있으니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SAMSUNG PROPRIETARY 안덕혈. T기술3그룹(메모리+2005.02.03